
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

일부개정고시안

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2023.12.31.까지”를 “2025.12.31.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 축(<u>2023. 12 31.까지</u> 가입한 것에 한하며. 이하 “청년 우대형 주택청 약종합저축”이라 한다.)을 해지하 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 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 은 제2호에 의한다.</p> <p>1~2. (생 략)</p>	<p>제2조(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(<u>2025. 12. 31.까지</u>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~2. (현행과 같음)</p>